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8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정성국·서천호·박충권
조정훈·정동만·조경태
김민전·김용태·김 건
조승환·김대식·서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 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제6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제6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생략)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의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④ ----- ----- ----- ----- ----- ----- ----- ----- <u>. 이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의외교습자가 제6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u>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생략) <신 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의외교습자는 제6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u>②</u> (생 략)	<u>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u> <u>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